



제 894 호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차 례

훈 령

- 훈령 제2009 -25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 폐지규정 1
- 훈령 제2009 -2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2

공 고

- 공고 제2009 -1629호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8
- 공고 제2009 -1632호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29
- 공고 제2009 -1644호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사전
행정처분 통보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30
- 공고 제2009 -16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공고 제2009 -1653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35

회 람								
--------	--	--	--	--	--	--	--	--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1월 27일

남동구 훈령 제251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 개 ·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 · 개 · 폐지 이유

- 기존의 행정규칙 중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피복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함.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9년 11월 27일

남동구 훈령 제252호

인천광역시남동구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환경미화원근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도시환경의 청결유지 관리(폐기물 수거 및 처리 포함)를 위하여 고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균등대우) 환경미화원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 ①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환경미화원 고용기준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 업무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구월1동장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환경미화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3장 고용 및 퇴직

제1절 고용

제7조(자격기준)

-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미화원으로
서 근무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병역필 또는
면제자)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관내의 군·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근무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8조에 의한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장소·방법 등

제9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고용순위)

-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실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3차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고용순위를 결정,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하며,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순위에 의하여 고용대상자를 선정, 고용하여야 한다.

1. 대민봉사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
2.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결격사유 여부

- ②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라 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고용)

-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퇴직

제12조(퇴직사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년 및 사망의 경우

제13조(퇴직일자 및 정년)

- ①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 ②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이 속한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4장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14조(환경미화원의 의무)

- ①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미화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 관내를 관할하는 지구대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청소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교통관련 법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3.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6조(청소장비관리)

-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관리의 손수레 등 장비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도구 등 장비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구청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미화원은 자기관리의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및 비품의 분실,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주민제도) 환경미화원은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기타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8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투기 행위
6.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7. 업무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태만 등
8.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9.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5장 근무

제19조(업무)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수거, 지정된 구역의 간선차도 및 인도와 담당구역 내 뒷골목 도시환경 청결유지 및 관리, 도로 물청소 등으로 담당업무 부여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복장)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 중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된 소정의 부착물을 부착한 작업복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고 착모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신고 등)

- ① 환경미화원이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근신고 시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미화원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기록카드) 담당과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미화원 기록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상황부 등) 근무부서의 장(담당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 또는 동장)은 근무상황부(별지 제4호 서식) 및 환경미화원 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및 임무)

- ① 환경미화원을 지휘 통솔하기 위하여 미화원 중에서 보조감독원

을 둘 수 있으며, 담당과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보조감독원은 담당과장의 명을 받아 미화원을 지휘 통솔하여 도로환경작업 및 도시 청결유지 작업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조감독원은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기록정리(별지 제6호 서식)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의거 보조감독원으로 임명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조장 및 임무)

- ① 남동공단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구 기동반 등에 배치된 미화원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통솔을 위해 미화원 중에서 조장 1명씩을 담당과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조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야 하며, 담당과장·남동공단출장소장·동장의 명을 받아 환경미화원을 지휘 통솔하여 도로환경작업 및 도시 청결유지 작업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조장은 매일 환경미화원 조장근무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담당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의 의거 조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환경미화원 담당국장 교육 : 년 2회
- 2. 담당과장, 남동공단출장소장, 동장 교육 : 분기 1회
-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27조(증명서 발급) 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

제서류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기준

제1절 근로시간

제28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식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근무시간 등)

-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05:00 ~ 09:00, 13:00 ~ 17:00
 2. 토요일 및 공휴일 : 05:00 ~ 09:00
 3. 그 밖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청소업무의 폭증,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미화원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를 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 ④ 근무시간 관리는 담당과장이 총괄 관리하며 남동공단출장소와 동 환경미화원은 소, 동장이 관리한다.

제30조(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비상출근 명령) 환경미화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휴가**제32조(휴일)**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 1. 1월 1일
 - 2. 설날
 - 3. 근로자의 날(5월 1일)
 - 4. 추석
 - 5. 노조창립기념일(9월 23일)
 - 6. 그 밖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날
- ②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33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①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이 선거 그 밖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 ④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 ⑤ 제4항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미화원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을 받은 후 필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휴가 및 공가) 환경미화원의 특별 유급휴가 및 공가는 단체협약에 의한다.

제35조(연차 유급 휴가)

- ①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연말에 수당을 지급한다.

- ②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휴가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③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6조(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미화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절 휴직

제39조(휴직 사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40조(휴직 기간)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휴직자의 신분) 휴직된 자는 환경미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

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2조(차용물의 반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장 징계

제43조(징계)

- 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 ② 감봉의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제8장 임금

제44조(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제45조(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참고자료에 의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환경미화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 이후 결근 등의 사유에 의한 공제금은 익월에 정산한다.

제48조(비상시 지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의 사망
 2. 환경미화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50조(안전보건)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1조(안전대책) 환경미화원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미화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

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할 것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을 반입 또는 보관하지 말 것

제53조(비상재해)

- ① 환경미화원은 화재 그 밖의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질병자의 취업제한)

- ① 법정 전염병, 정신병,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 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5조(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傷病)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재해보상

제56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제57조(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환경미화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구청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9조(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장 기타

제60조(시행상 해석 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규정의 효력)

-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상이한 규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환경미화원

구 분	위반사항	처 분 기 준				
		경 고			감봉	해고
		1차	2차	3차		
발생시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 확정자					1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1회	2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도 급 행 위				1회	2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2회	3회
	조장 등의 제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2회	3회
2년 단위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무 단 결 근			1회	2회	3회
	근무 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 조장			1회	2회	3회
	근무 중 주민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지 참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담당구역 청소상태 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복장 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및 안전의무 미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위 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장비관리 불철저 및 분실	1회	2회	3회	4회	5회
처 분 등 의 기 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하여 경고처분이 2년간 8회 이상이면 해고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뒷면)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 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란에
○표할 것.
- ⑤ 자 격 중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 (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 ⑪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 연령을 기재할 것.
- ⑬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일 것.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관리기록 카드

소 속			성 별			주 소			고용일자			
성 명	한글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장	체 중	진 화 번 호	휴 대 폰	최종출신학교명	
	한문			신 장	체 중							신 장 상 태
(사진)			개 인 신 상		미 필	역 종	병 과	계 급	군 번	입 대 일	복 무 기 간	
												병 역 관 계
			구 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령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경력 및 발령사항				(뒷면)	
근무명령 일자	근무지	직위	담당업무	기타사항	기록자인
본인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년월일 성명 : (인)		소속기관장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년월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년 월분

환 경 미 화 원 출 근 부

소속 : 남동구 ○○동(가로)

성명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결근 일수	유급 휴일	출근 일수	비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출근자 인																				
확인자 인																				
출근자 인																				
확인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청소감독원 복무일지

일 자	20 년 월 일(요일) 날씨()				
지시받은 사 항					
주요처리 사 항					
순찰사항	순찰시간	청소상태	미화원 근무상태	이상유무	
인원현황	총 원	현 원		결 근	기 타 (병가, 공가 등)
		구	동		
인원관리					
동 배치자 휴일근무 현 황	○ 총 : 명(출근: 명 , 결근 : 명) ○ 결 근 자 :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기타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환경미화원 조장 근무일지

()동

20 년 월 일

			결재	담당	팀장	
성 명	개인별 작업 내용		봉투사용량	근 태 사 항 연가/반가/조퇴/지각/시간외근무	확 인 서 명	
	오전	오후			본 인	조 장
☐ 특이사항 (합동청소, 사고발생 등)						

제 · 개 ·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 제 · 개 · 폐지 이유

- 재활용품수거미화원이 환경미화원으로 흡수 · 통합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 환경미화원의 근무, 임금기준, 준수사항 및 징계기준 등을 구체화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의 정의 (제2조)
-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부터 제6조)
- 퇴직사유 및 정년 (제12조부터 제13조)
- 환경미화원 준수사항 (제14조부터 제18조)
- 감독 및 조장의 임무 (제24조부터 제25조)
- 임금의 종류, 계산시기, 시효 (제44조부터 제49조)
- 징계처분기준의 구체화 (별표)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다이아나(주) 외 383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23. ~ 2009. 12. 08.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과 상이한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 (☎ 032-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만약 공고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 - 1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박성협 외 162건
 - 공 고 기 간 : 2009. 11. 24. ~ 2009. 12. 9.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 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및 구 홈페이지 참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손해보험팀(☎032- 453-2925, 2926 FAX : 032-453-29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 남동구 만수동 권공진 외 1명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9. 11. 26. ~ 2009. 12. 10.(15일간)
- 공 고 내 용 :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사전 행정처분 통보서 수취 불능분 공시송달

접수 일자	위 반 사 항				업체명 운전자	주소	예견된 행정처분	법적 근거
	일시	장소	차량 번호	신고내용				
10.23	10.20 (10:53- 11:23)	송내남부역	인천30 바9841	장기정차여객 유치	권공진	인천 남동구 만수동	과태료 20만원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제26 조제1항
10.13	10.13 11:38	길병원 맞은편 삼성화재-> 시흥시 당산동	인천30 바7548	부당요금	주명길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과태료 20만원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제26 조제1항

1.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위반(교통불편, 법규위반)에 따른 사전
행정처분(의견제출) 통보서 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
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통보서 수령대상자는 2009.12.07일까지 남동구청 자동
차관리과(☎453-2912)로 오셔서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통지한 사항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032-453-2912,

FAX : 032-453-2919)으로 전송 또는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등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공고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예고된 행정처분 사항대로 처리되며 또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등 회계 책임 관련 규정을 재무회계규칙에 신설하여 회계 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
 - 회계 관계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회계 관계 공무원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집행하

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포함 (안 제2조 제4항)

- 회계 관계 공무원과 회계 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 책임 (안 제2조 제5항)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영재정과(☎453-2261)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88 남동구청,

☎453-2261, FAX 453-226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등 회계책임 관련 규정을 재무회계 규칙에 신설하여 회계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
- 회계관계 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대상 및 범위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항)
-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변상책임 규정 신설 (안 제2조제5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표준안」(행정안전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9-1653호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를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3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09. 11. 30. ~ 12. 15.

4. 보상협의 통지서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설과
- 전 화 : (032)453-2714

6. 공시송달 내역

가. 송달내용 :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나. 소유자 및 관계인 현황

【소유자】 윤두섭 : 인천 남동구 수산동 55-2

【소유자】 평소성만 : 인천 남동구 수산동 39

7.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